

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조교 복무협약서

제1조(목적) 기관의 장 _____ (이하 “기관장”)과(와) 대학원생 조교 _____ (이하 “조교”)은(는) 다음과 같이 조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협약을 체결한다.

제2조(복무기간, 장소, 내용 및 시간)

1. 복무기간 : 아래 3가지 중 선택

- ☐ 1학기 : 금년 3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
- ☐ 2학기 : 금년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
- ☐ 그 외 :

2. 복무장소 : _____ 관 _____ 호

3. 복무내용 : 아래 2가지 중 선택

- ☐ 연구조교(R.A.) : 교원의 연구수행 보조, 연구지원, 실험실 장비 유지·보수·관리 등
- ☐ 교육조교(T.A.) : 강의자료 준비, 출결확인, 시험감독, 채점보조 및 실험·실습 등

4. 복무시간 : 주 _____ 시간

※ “조교”의 학업·연구권 보장을 위해 주 2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수행업무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

제3조(장학금 지급)

1. 지급금액 : 장학금 총 _____ 원

2. 지급방법 : 아래 2가지 중 선택

- ☐ “조교”의 등록금 고지감면(납부 전)
- ☐ “조교”명의 예금통장 계좌지급(납부 후)

제4조(안전·보건 보호) “기관장”은 “조교”의 복무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 실험실 환경안전 관리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안전·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제5조(인권·권리 보호) “기관장”은 “조교”의 복무 중 “조교”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조교 운영 책임자 등에게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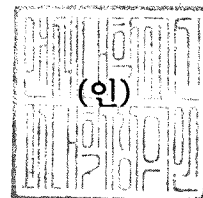
제6조(위반 시 처벌·제재) 본 협약서의 복무 조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, “조교”는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운영책임자 또는 “기관장”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“대학원장”은 인권센터 등 관계부서에 직권조사를 명하거나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 중단·해지) “조교”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및 휴학·자퇴 등 사정으로 복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복무 수행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교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때 “조교”는 조교활동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서 교부) “기관장”은 본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“조교”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협약서를 “조교”에게 교부해야 한다. 또한, “기관장”은 본 협약서를 사본하여 운영책임자에게 교부하며, 운영책임자가 협약 내용에 따라 “조교”의 복무관리 및 제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.

20 . . .

(기관장) 복무기관 : 신과대학
기 관 장 : 신과대학장



(조교) 소 속 :
연 락 처 :
성 명 : (인)

운영책임자

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(인)

* 기관장 : 단과대학장/학부장(혹은 부서장)

* 운영책임자 : ① 연구조교(R.A.)의 경우 지도교수 ② 교육조교(T.A.)의 경우 학과장